

브로큰베이 가톨릭 교구 일반 초청 연사 및 평신도 사역자 방문 정책



CATHOLIC
DIOCESE OF
BROKEN BAY

내용

본 문서는 브로큰베이 교구(이하 '교구') 일반 초청 연사 및 평신도 사역자 방문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사목구와 Chancery 사무소는 종종 본당 성도들과 지역 사회의 영적 발전을 위해 일반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. 이를 위해 각 계 전문가를 초빙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러한 외부 인사들은 서품을 받거나 종신서원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

적용 & 범위

본 정책은 교구 내 성직자, 임직원, 계약자, 자원봉사자, 실습생 및 견습생(근로자)에 적용됩니다. 교구 내의 기관(예: 가톨릭 학교 학무과 또는 CatholicCare)이 별도로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.

목적

본 정책의 목적은 사목구와 Chancery 직원 모두의 책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. 일반 초청 연사 및 평신도 사역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 교구에서 활동하면서 주교의 안내에 따라 교구의 사명과 일치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본 문서는 이에 필요한 보호 관행, 법적 의무 및 후속 행정 절차들을 강조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.

정책

초청 이유에 따라 일반 일반 초청 연사 및 평신도 사역자는 교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거나 대중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계획된 사역이나 활동의 종류에 따라 일반 초청 연사 및 평신도 사역자에게 적합한 행정 절차를 선택하고 수행해야 합니다.

정의

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 (이하 '등록부'):	사목구의 아동 관련 사역, 관련 역할 및 근로자 선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장부
일반 초청 연사:	사목구 또는 교구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초청받은 사람으로, 작가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(예: 양육)
평신도 사역자:	서품을 받지 않았지만 예배 또는 기도(예: 성도 참여가 이루어지는 치유 강론) 등의 교회 사역을 수행하거나 봉사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
종교 기반 사역:	가톨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위한 종교 활동 또는 그러한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
선별 심사:	사목자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호(Safeguarding) 관행
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(WWCC):	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제 조건으로, 연방 범죄 기록 조회 등을 포함하는 신원 조회 과정

절차

1. 평신도 사역자와 일반 초청 연사 정의 구분

- 1.1. 본당 주임 사제 또는 Chancery 관련 기관장(이하 '기관장')은 방문하는 사역자가 본 정책 상의 '평신도 사역자' 정의에 속하는지, '일반 초청 연사' 정의에 속하는지 분별합니다.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대리에게 조언을 요청합니다.

1.2. 일단 정의가 구분이 되면,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은 해당 정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합니다.

2. 평신도 사역자

해당 법률과 교회 정책을 준수하고 적합성을 가름하기 위해, Safeguarding Office(Chancery 및 사목구, 이하 'Safeguarding Office')는 교구 또는 본당 행사나 사목에 참여하는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선별 심사를 실시합니다.

2.1.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의 보호 책임

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은 치료 사역이나 어떤 형태의 예배 행사와 같은 대중사역을 제공하게 되는 평신도 사역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주교/대표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
- (a)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은 총대리에게 이를 통지하고 사목구 또는 교구(Chancery)의 방문 허가를 요청합니다.
- (b) 총대리는 적합성을 확인하고 허가하는 경우 Safeguarding Office 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. Safeguarding Office 는 사역자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서들을 확인해서 민법 및 교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- (c) NSW 주 WWCC 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 사역자는 WWCC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(d) Safeguarding Office 는 총대리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, 총대리는 허가를 결정합니다.
- (e) 총대리로부터 허가가 발부되면, Safeguarding Office 는 평신도 사역자와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. 이때 허가서(A supporting letter of permission)도 함께 전달됩니다.

3. 일반 초청 연사

3.1. 일반 초청 연사에 대한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의 보호 책임

교구와 사목구의 사명과 이념에 합당한 연사를 초청하는 것은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의 결정이지만, 초청 연사가 발표하게 되는 내용들은 주교의 사목 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. 일반 연사 초청에는 총대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외부 연사 초청은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합니다.

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은 WWCC 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,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(도움이 필요하시면 Safeguarding Office 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). 부모/보호자 참석없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초청 연사는 WWCC 를 소지해야 합니다(예 : 초청 연사가 심사자, 공연자, 평가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). 이러한 경우는 현행 법 상 초청 연사가 아동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.

3.2. WWCC(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) 면제 대상

- 초청 연사가 단지 성인 참가자에게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동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WWCC 확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은 초청 연사의 교구 방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
4. WWCC 소지 또는 WWCC 면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

4.1. 본당 주임 사제가 수행해야 할 절차

본당 사무소(Parish Office)는 초청 연사의 NSW 주 WWCC 를 확인하고 아동 관련 활동 교회 등록부 (장부)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. 만약 방문자가 NSW 주 WWCC 가 없는 경우에는,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. 해외 또는 타 주/테리토리에서 온 연사인 경우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단, 관련 규정의 조건과 예외를 확인하십시오.

4.2. 기관장이 수행해야 할 절차

기관장은 Safeguarding Office 에 통보합니다. 그러면 사무소는 NSW 주 WCCC 를 검증하고 기관장을 대신하여 Chancery 에 보관된 WWCC 등록부를 업데이트합니다. 또한 초청 연사의 WWCC 면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afeguarding Office 는 이에 적용한 절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합니다.

5. 본당 주임 사제/기관장의 책임

- 5.1. 본당 주임 사제는 초청 연사가 발표하는 자리에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.
- 5.2. 기관장 또는 기관장 대리는 초청 연사의 발표에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.
- 5.3. 본당 주임 사제와 기관장은 교구 Diocesan Office for Communications 에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. Diocesan Office for Communications 는 교구(Chancery) 및 사목구의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홍보합니다. 주변 지역 공동체들도 본당 행사에 대해 정보와 참여를 원할 수 도 있습니다.

6. 우려 행동에 대한 신고 의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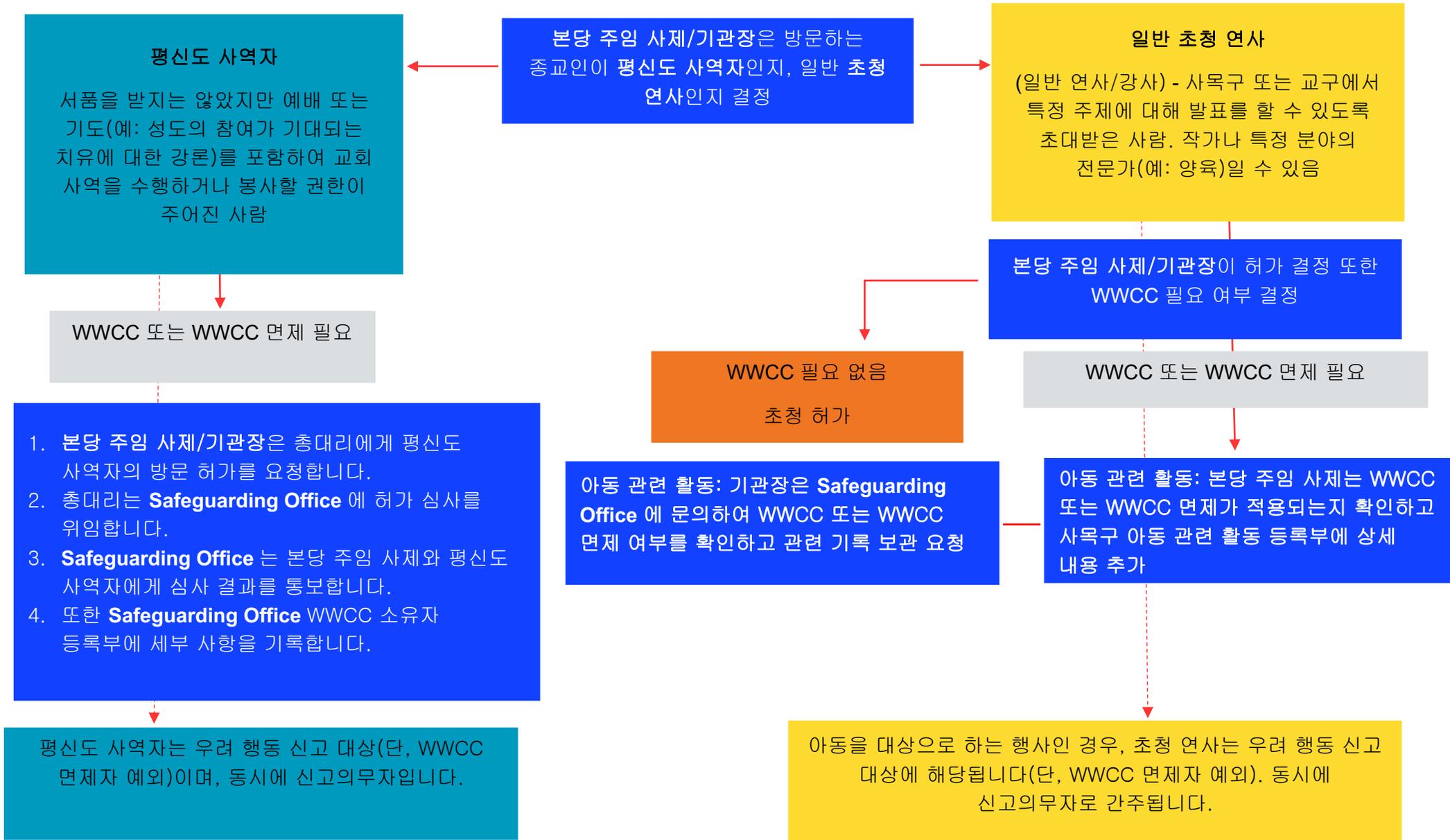
교구에서 WWCC 소지가 필수인 행사에 참여하는 초청 연사나 평신도 사역자는 NSW 주 아동양육법(NSW Children's Guardian Act 2019)에 명시된 우려 행동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**신고 대상 행동 정책**을 참조하십시오.

7. 신고 의무

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종교와 관련된 '초청 연설(종교적 활동)'을 제공하는 외부 인사도 신고의무자로 간주됩니다. 즉, 16 세 미만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, 상기 신고의무자는 Child Protection Helpline 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**신고 의무 정책**을 참조하십시오.

부록 A

사목구나 교구(Chancery)를 방문하는 평신도 사역자 또는 일반 초청 연사



참고 문헌

- 아동양육법 (Children's Guardian Act 2019)
- 어린이 및 청소년(양육 및 보호)법(Children and Young Persons (Care and Protection) Act 1998)
- 아동보호(아동관련업무)법(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Act 2012)

관련 양식

- 평신도 사역자 양식(Lay Minister Form)
- 행동 진술서(Statement of Conduct)
- 사목구 아동 관련 활동 등록부 (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 Template)

관련 정책

-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정책(Working with Children Check Policy)
- 사목구 아동 관련 활동 등록부 정책(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 Policy)
- 신고 의무 정책(Mandatory Reporting Policy)
- 신고 대상 행동 정책(Reportable Conduct Policy)

정책 검토

Safeguarding Manager 가 매 3 년마다 Office for Safeguarding 의 Safeguarding Officer 와 협의하여 본 정책, 관련 양식 및 자료를 검토하고 총대리의 승인을 받습니다.

개정 / 수정 이력

날짜	버전	현재 제목	변경 사항 요약	승인 날짜	적용 시작 날짜
05/05/20	1.	외부 인사 초청 정책	신규	2020 년 7 월	2020 년 7 월
12/03/24	2.	일반 초청 연사 및 평신도 사역자 정책	평신도 사역자의 정의 및 사무실 이름 변경	2024 년 3 월	2024 년 3 월

승인 날짜/재검토 일정

- 승인자: 데이비드 랜슨 신부, 총대리
- 승인 날짜: 2024 년 3 월 12 일
- 재검토 예정일: 2026 년 3 월 12 일